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 길 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 길 영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현행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다른 조례와 상이하여 혼란을 빚을 수 있는 바, 청년의 나이 기준을 타 조례와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 ‘청년’의 정의를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를 근거로 하여 바꾸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